

부적격혈액 출고정보서

공급혈액원	명칭	연락처
	주소	
부적격혈액 정보	혈액제제 명칭	혈액번호
	부적격사유	
채혈일자		
공급일자		
그 밖의 특이사항		

「혈액관리법」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귀 의료기관으로 출고된 부적격혈액에 관한 정보를 위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○○ 혈액원장

직인

○○ 의료기관의 장 귀하

유의사항
1. 부적격혈액 출고정보를 통보받은 의료기관은 해당 부적격혈액을 「혈액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0조제1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리한 후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기처분하여야 합니다. 해당 부적격혈액을 폐기처분 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혈액관리법」 제19조제9호의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2. 부적격혈액을 이미 사용하였거나 「혈액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그 사용내역 또는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혈액원에 알려야 합니다.